

2021년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종로구에서는,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종로 청년창업센터 소개

- 시설명 : 종로 청년창업센터
- 위치 :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 내일빌딩 사옥 5층
- 규모 : 595.0㎡ (전용면적 368.9㎡, 공용면적 226.1㎡)
- 수용인원 : 48명 / 독립형 사무공간(4인실) 6개, 오픈형 사무공간 24석
- 편의시설 : 회의실, 네트워킹 라운지
- 운영시간 : 24시간
- 운영기관 : 종로구청
- 위탁운영기관 : 종로문화재단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팀)

- 단체의 경우 구성원 수(대표자 및 직원) 4인 이내로 제한
- 입주 후 센터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의무 (예비창업자 3개월, 기창업자 2개월)
- 기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이 2017.12.30.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만 19세~39세 서울 시민 중 자격 제외대상에 해당이 없는 자

- 종로구민,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우대
- 지식재산권 활용사업, 투자유치 기업,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업 우대
- ※ 자격 연령은 공고일(2020.12.30)을 기준으로 함
- ※ 자격 제외 대상 공고문 별첨 자료 확인

① 예비창업자

-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예비창업팀의 대표자

- 추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예비창업팀의 팀원은 모두 만 19~39세의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③ 스타트업(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대표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 창업일자는 사업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일 기준

□ 모집분야 : 제한 없음

- 종로구 입지, 관광 자원,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사업아이템 우대
- IT 및 기술(방송통신, APP 개발 등),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출판 등), 디자인(패션 등) 분야 우대

□ 모집규모 : 독립형 1개실(4석), 개방형 23석

-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0.12.30.(수) ~ 2021. 1.13.(수) ※ 마감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 제출처 : startup@jfac.or.kr
- 제출서류

공통 제출 (필수)	· 입주신청서 1부(제공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공양식)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기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업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1부
해당자 제출 (가점 해당자)	·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국세청 매출증빙자료
	· 가점 항목 증빙 서류

2.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지원

○ 입주 지원 기간 : 2021. 2. 1. ~ 2021.12.31.

※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별도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우수창업자에게는 1년 연장 혜택 제공
- 입주 부담금 (연 1회 일시 선납)

구분	독립형 (1실 기준)	공유형 (1석 기준)
입주부담금 (관리비, 공공요금 포함)	월 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월 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업무 공간 및 부대시설

- 선정 결과에 따라 독립형 및 공유형 사무 공간 배정

	독립형 (4인 사무공간)	공유형 (1인 사무공간)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2.8㎡ (전용 15.1㎡, 공용 17.7㎡) · 책상, 의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7.13㎡ (전용 7.13㎡, 공용 4.43㎡) · 책상, 의자, 사물함 제공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2개, 창고 1개 · 공용 사무기기(복합기, 파쇄기) · 네트워킹 라운지(커피머신, 냉장고, 전자렌지) · 보안 및 통신 	

□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 세무, 경영 등 수요에 따른 지원
- 창업 멘토링 : 창업 아이템, 마케팅 등
- 판로개척, 투자유치지원, 네트워킹 등

○ 창업교육

-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창업종합교육

○ 기타지원

- 창업보육상담(정부지원, 운영, 창업활동 등)
- 창업 관련 공모 사업, 정부지원사업, 투자유치 정보 지원
- 유관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지원

3. 심사 절차

□ 선정 절차 : 서류 심사(1차), 발표 심사(2차)

- 서류심사(1차)
 - 심사위원 평점 합계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최종 선정목표의 2배수 내외 선발
 - ※ 신청자가 소규모일 경우, 서류심사 없이 적격심사만 진행
- 발표심사(2차)
 -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 발표(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5분)
 - 사업 신청자(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 평점 합계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 심사기준

○ 심사기준

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역량,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시장성	아이템의 독창성 및 경쟁력, 목표시장과 핵심고객 분석 타당성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계획 충실도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및 충실도

○ 가점사항

- 사업신청자(대표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① 모집공고일(12.30.) 기준 주민등록상 종로구 거주자(10점)
- ②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5점)
- ③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5점)
 - ※ 신청자 명의로 출원 등록 완료된 것만 해당
- ④ 클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등 투자실적이 있는 자(3점)
 - ※ 지원 동일사업으로 공고일(12.30) 기준 3년 이내 투자계약서 등의 실적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⑤ BI 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업(3점)
 - ※ 지원 동일사업으로 공고일(12.30) 기준 1년 이내 선정 확인서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신청자(대표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합격 후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항목 중 최고점만 인정(중복인정 불가)

4. 심사 및 입주 일정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타인의 명의로나 아이탬 도용,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부정표시 등)의 경우 심사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입주계약 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일자까지 해당 공간에 입주하여야 함
-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약서 상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창업자는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이전
-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부담금 1년분 선납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동안 진행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에 따른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위반자는 중도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문의처

- 종로문화재단 종로청년창업센터 담당자(02-6203-1164)

별첨.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아래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할 수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종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공모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세금완납 기업(인)은 신청가능

④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